

칠곡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 4. 24.

산업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. 4. 15.

나. 제출자: 칠곡군수

다. 회부일자: 2024. 4. 16.

라. 상정일자: 제29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(2024. 4. 24. 상정·심사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출설명자: 지역활력과장 이재혁)

가. 제안이유
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공기관 및 군민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전과 자원낭비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1)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
2)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
3)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의 수립(안 제4조)

-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, 홍보 및 교육, 관련 지원사업, 실태조사 등 포함

4) 1회용품 사용·제공 제한 권장 및 자발적 협약에 관한 사항(안 제5조, 제6조)

- 공공기관 주최 행사, 군이 보조금 또는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·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 등에 1회용품 사용·제공 제한 권장

- 대규모점포, 장례식장, 식품업체 등의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자발적 협약 체결 및 협약 이행에 따른 지원 가능 (안 제6조)
- 5) 1회용품 사용을 줄인 환경 우수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6)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 -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개선 요청 가능
- 7)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 및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- 8) 재정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, 제11조)
 -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공공기관의 1회용품 대체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가능함을 명시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최일영)

○ 「칠곡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」은

- 1회용품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로 환경문제가 심각함을 인식하고,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과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,
- 검토 결과, 상위 법령과 절차의 이행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특이사항 없음

6. 소수의견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[원안가결](#)